



땅 끝 해 남 소 식

2023년 11월 15일(554호)

HAENAM NEWS

◆ **군정목표** ◆

힘찬도약,
살맛나는 으뜸해남

◇ **군정방침** ◇

소통공감 윤리경영
지속가능 미래농업
서남해안 관광중심
상생활력 균형발전
사람중심 나눔복지

발행인: 해남군수 발행처: 기획실 주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해남군청
대표전화 061)530-5321팩스 530-5574 홈페이지 http://www.haenam.go.kr
© 본지에 실린 고시·조례·조례 등은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

조례

- ◎ 해남군 조례 제3269호 -----2
- ◎ 해남군 조례 제3270호 -----17
- ◎ 해남군 조례 제3271호 -----37
- ◎ 해남군 조례 제3272호 -----41
- ◎ 해남군 조례 제3273호 -----46
- ◎ 해남군 조례 제3274호 -----49
- ◎ 해남군 조례 제3275호 -----54
- ◎ 해남군 조례 제3276호 -----64
- ◎ 해남군 조례 제3277호 -----73

고시

- ◎ 해남군 고시 제171호 -----78

공고

- ◎ 해남군 공고 제2294호 -----81
- ◎ 해남군 공고 제2531호 -----86

조례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10. 27.)에서
의결된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69호

불임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1부.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로 한다.

제2조(「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의 개정)

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의 개정)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을 “「양식산업 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을 “「양식산업 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의 개정)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해남군 재무회계규칙」”을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해남군 재무회계규칙」”을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항 중 “ 「재무회계규칙」 ”을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4조(「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의 개정)

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을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5조(「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의 개정)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을 “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 「혈액관리법」 제4조의3”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6호”를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로 한다.

제16조(「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7조(「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 의 개정)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8조(「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을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19조(「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의 개정)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을 “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4의 기호(□ 사용료 산정기준) 중 “같은 법 제32조제8항”을 “같은 법 제32조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중·저가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이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호텔업의 등급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9. · 10. (생략)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 ----- ----- ----- 9. · 10. (현행과 같음)

제2조(「해남군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불꽃놀이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13조(불꽃놀이 금지) ① -----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해남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② (생 략) ③ 기금의 출납은 「해남군 예 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남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

제4조(「해남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 ----- -----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 -----.

제5조(「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재무회계 규 칙」을 준용한다.제19조(시행규 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 행과 같음) ② -----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 ----- -----.

제6조(「해남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준용) 장난감도서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 ----- ----- -----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 -----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8조(「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 소득보전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 -----.

제10조(「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준용) -----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

제11조(「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용허가·관리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회계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해남군 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 ----- ----- -----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2조(「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준용규정)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해남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준용규정) ----- -----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3조(「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경비등의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제6조의3(경비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방법 및 절차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또는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제14조(「해남군 흑석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준용) 치유의 숲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준용) ----- ----- -----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5조(「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생략)

제14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6호 규정에 의거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 처리한다.

④·⑤ (생략)

-----.

1. ----- 「혈액관리법」 제4조의3-----

-----.

2.·3. (현행과 같음)

제14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8조(분석 수수료) ① (생략)</p> <p>② 수수료 징수절차는 「<u>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을 준용한다.</p> <p>③ (생략)</p>	<p>제8조(분석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p> <p>③ (현행과 같음)</p>

제17조(「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대금납부 및 처리) 조직배양묘의 공급대금 납부와 관련한 회계처리절차는 「해남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2조(대금납부 및 처리) ----- -----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18조(「해남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5조(사용료 등) ①·② (생략) ③ 사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별지 제25호, 25-1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남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19조(「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용료) ①·② (생략)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	제11조(사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4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별표 4]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3항)

□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같은 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은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물질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같은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 $\frac{1}{1000}$ (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 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 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량) + (총인 또는 총질소) + 부유물질량

④ (현행과 같음)

[별표 4]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1조제3항)

□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같은 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량, 부유물질량은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물질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같은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라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 $\frac{1}{1000}$ (kg/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 단가(원/kg)
 -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 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또는 총유기탄소량) + (총인 또는 총질소) + 부유물질량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10. 27.)에서
의결된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70호

붙임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1부.

부서(장) 명칭변경 등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12명”을 “13명”으로 한다.

제5조(「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군수가”를 “보건소장이”로, “보건소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별표 2] (현행)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총무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3.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안전도시과
4.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총무과
5.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도시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재무과 안전도시과 해양수산과 안전도시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가.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스포츠사업단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축산사업소 건설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과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보건소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다.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마.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바. 황사	환경교통과 환경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교통과 환경교통과 환경교통과
12.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건설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상하수도 환경교통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건설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15.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재무과
6원사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 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17. 소방청	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해당실과 건설과
18.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복지과 산림복지과
20.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수산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 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2] (개정안)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1.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총무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총무과
3. 외교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안전교통과
4.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총무과
5. 국방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교통과
6.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재무과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가.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스포츠사업단 문화예술과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	축산사업소 건설도시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환경과

	나.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다.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라.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마.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바. 황사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
12. 고용노동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산업과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과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 안전교통과 건축허가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15. 금융위원회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재무과
16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
17. 소방청	가. 화재·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해당실과 안전교통과
18.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예술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
20. 해양경찰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수산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4] (현행)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기획실장		
통 제 관		주관부서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인 원		6+a명	13+a+β명	18+a+β명
반 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급 1명	과장급 1명	과장급 1명
실 무 반	1) 상 황 관 리 총 괄 반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6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 황 보 고 서 작 성 팀	-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 황 관 리 총 괄 및 상 황 분 석 평 가 팀	-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 정 지 원 팀	-	(1명) · 총무과 직원 1명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교통과, 해양수산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경제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기획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도시과)
	아) 교통대책반(환경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주민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총무과/경찰서협조)
	타) 수색, 구조·구급반(안전도시과/소방서협조)
3) 관계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지 원반 (β)	· 해남교육지원청, 육군제8539부대 4대대,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KT 해남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도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별표 4] (개정안)

자연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비상단계		비상1단계	비상2단계	비상3단계
본부장		군수		
차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기획실장		
통제관		주관부서장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담당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		
실무반	인원	6+a명	13+a+β명	18+a+β명
	반장	재난안전상황실 팀장급 1명	과장급 1명	과장급 1명
	가)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팀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5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1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6명) · 재난안전상황실 직원 2명 · 자연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상황보고서 작성팀	-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다) 상황관리총 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3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주관부서 직원 2명	(7명) · 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주관부서 직원 5명
	라) 행정지원팀	-	(1명) · 총무과 직원 1명	(1명)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과, 해양수산과)
	다) 긴급 통신지원반(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도시과)
	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경제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기획실)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안전교통과)
	아) 교통대책반(안전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복지정책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총무과/경찰서협조)
	타) 수색, 구조·구급반(안전교통과/소방서협조)
3) 관계 지역재난 관리책임기관 지 원반 (β)	· 해남교육지원청, 육군제8539부대 4대대,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KT 해남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도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6.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별표 6] (현행)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기획실장			
통 제 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과장급 1명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총 괄팀 (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과 약팀 (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다) 행정지원팀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주민복지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교통과, 해양수산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건설과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산업과	
바) 재난수습		· 기획실		

	홍보반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 안전도시과
	아) 교통대책반	· 환경교통과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주민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총무과/경찰서 협조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안전도시과/소방서 협조
	관계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 해남교육지원청, 육군제8539부대 4대대,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KT해남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부서 소속 직원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4호의 통제관은 안전도시과장이 제2통제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1)통제관과 함께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재난 수습업무 전반적인 행정지원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 제2조제2항제5호의 담당관 및 제12조제2항제3호의 팀장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당업무 과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별표 6] (개정안)

사회재난에 따른 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본 부 장	군수		
차 장	부군수		
총괄조정관	기획실장		
통 제 관	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담 당 관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급		
실 무 반	인 원	총 10+α+β+γ명	
	반 장	과장급 1명	
	1)재난상황 총괄반 (9명)	가) 상황관리총 괄팀 (3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과 악팀 (6명)	· 사회재난 총괄부서 직원 2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4명
		다) 행정지원팀	· 총무과 직원 1명
	2)협업기능 반(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복지정책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과, 해양수산과
		다) 긴급 통신 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건설도시과
		마) 에너지 공 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경제산업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사) 재난관리지원 지원반 아) 교통대책반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카) 사회질서 유지반 타) 수색, 구조·구급반	· 기획실 · 안전교통과 · 안전교통과 · 보건소 · 복지정책과 · 총무과/경찰서 협조 · 안전교통과/소방서 협조
관계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β)		· 해남교육지원청, 육군제8539부대 4대대,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 KT해남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부서 소속 직원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4호의 통제관은 안전도시과장이 제2통제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제1)통제관과 함께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고 재난 수습업무 전반적인 행정지원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 ※ 제2조제2항제5호의 담당관 및 제12조제2항제3호의 팀장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당업무 과장이 임무를 수행한다.

제2조(「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별표 2] (현행)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 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 보 관 (기 획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해 당 부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軍)·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안 전 도 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 장 대 응 반 (해 당 부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해 당 부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 민 지 원 반 (해 당 부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별표 2]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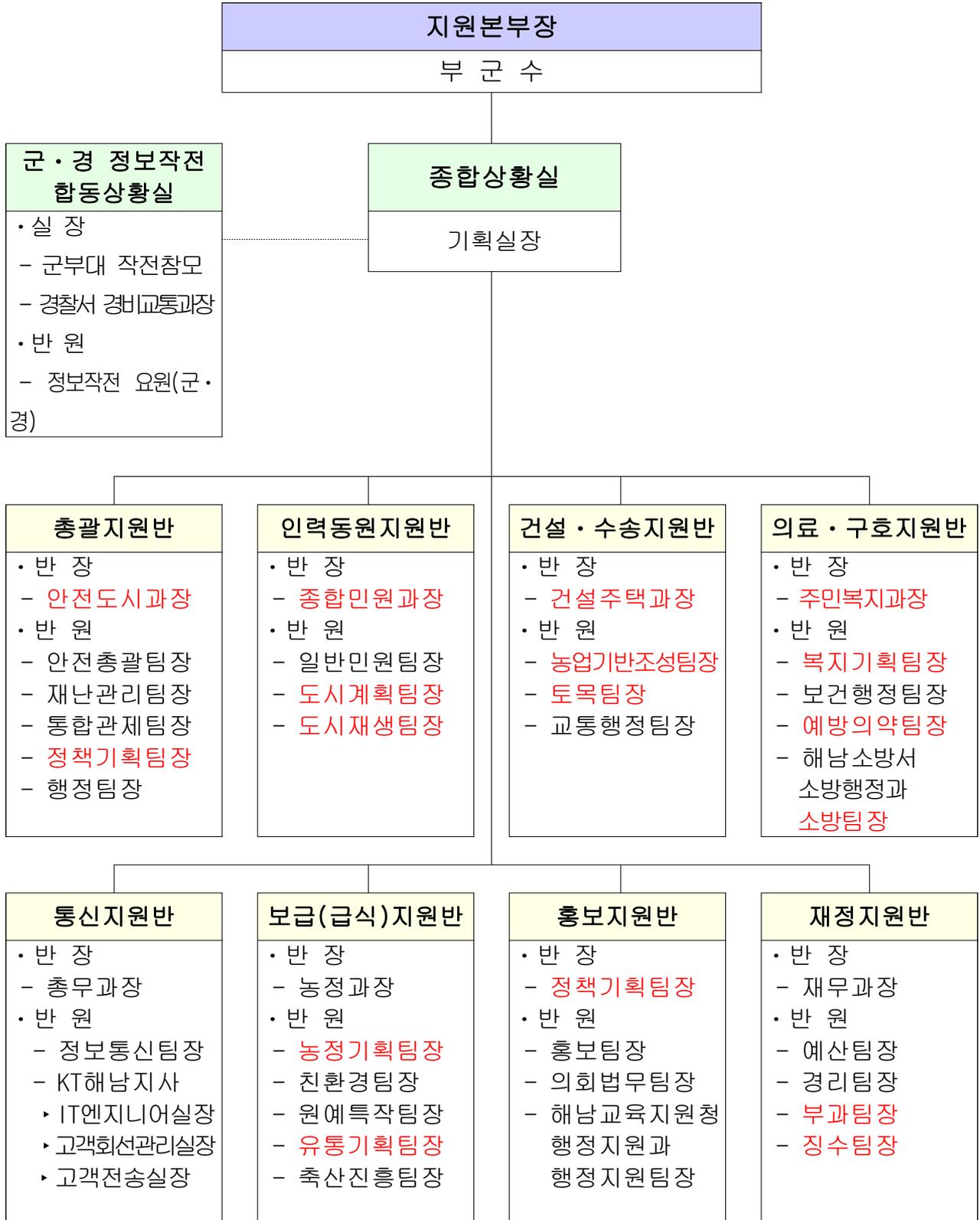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주요임무(제7조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통합지원본부장 (부 군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대응·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공 보 관 (기 획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연 락 관 (해 당 부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軍)·경·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협회간 협업
상 황 총 괄 반 (안 전 교 통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분석·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공유·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현 장 대 응 반 (해 당 부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구조 지원
자 원 지 원 반 (해 당 부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대 민 지 원 반 (해 당 부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제3조(「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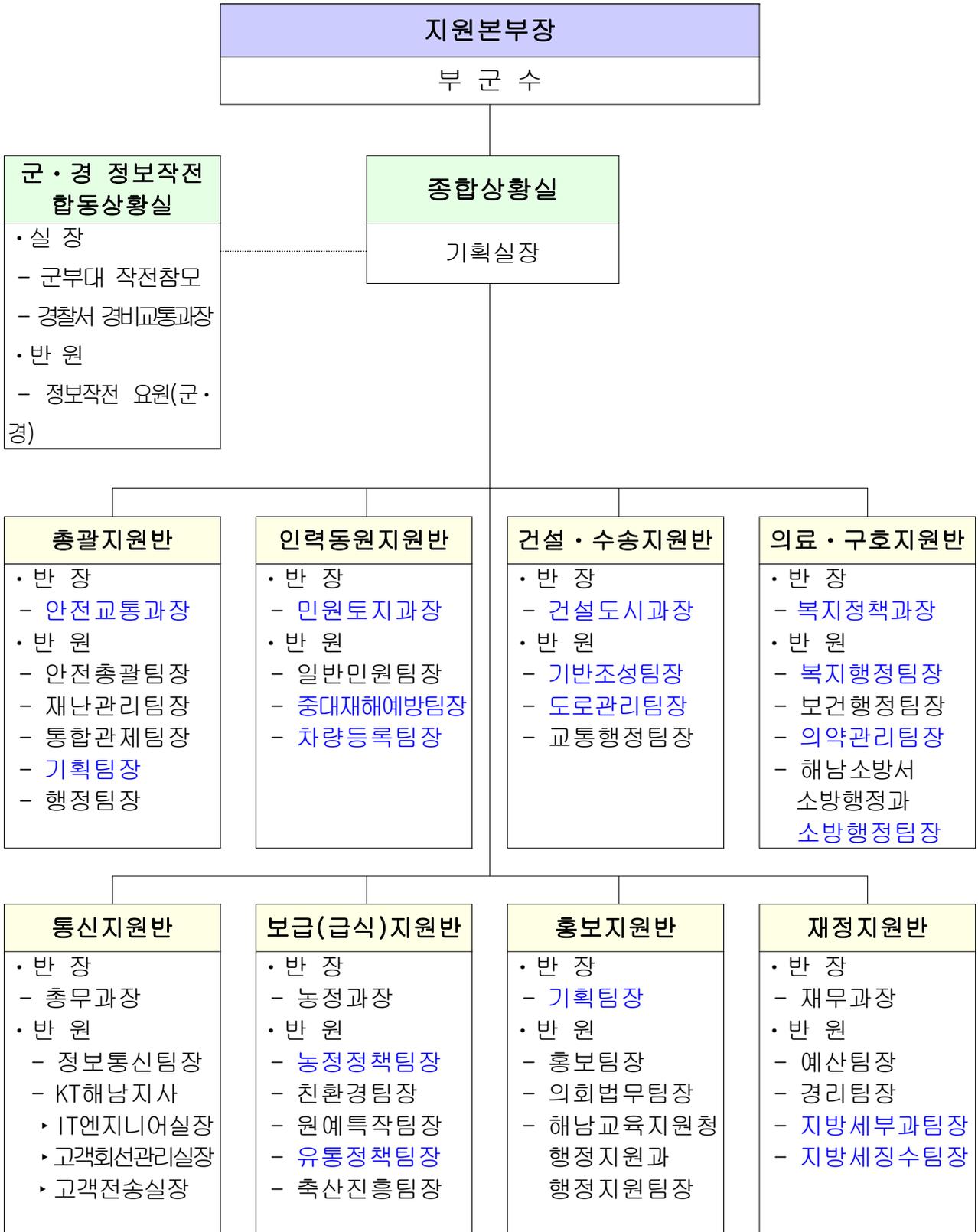
[별표 1] (현행)

해남군 통합방위지원본부(제5조제2항과 관련)



[별표 1] (개정안)

해남군 통합방위지원본부(제5조제2항과 관련)



제4조(「해남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제16조(구성) ① ----- ----- 13명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의회 구성) ①·② (생략) ③ 협의회 위원장은 <u>군수</u> 가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은 <u>보건소장</u> 이 된다. ④ (생략)	제7조(협의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보건소장</u> 이 ----- <u>위원</u> 중에 호선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10.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71호

붙임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제1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정상 근무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 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무인민원발급창구 사용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10.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72호

붙임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

해남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른 해남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 할 수 없다.

1. 당연직 : 총무과장
2. 위촉직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회 회신과 서면심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8조의2(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 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5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표물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종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명의 선정과 사용) 지명은 지리적 위치, 역사적 사실, 그 밖의 지역 특성 등을 참작하여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10.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73호

붙임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택시의 차령)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의 택시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1조(택시의 차령)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의 택시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p>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10.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74호

붙임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해남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불용농약,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점적호스, 모판 등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군내에서 영농 및 축산, 버섯재배업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직계 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4. “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노인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군내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수거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4조(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등 농촌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수거자는 적기에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③ 군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군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처리
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
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5.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집중 수거기간) 지정 등
6.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수거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사항이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관리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등)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시설 확충·관리

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영농폐기물 수거·분류와 처리를 위한 인력 확충 및 파쇄기 보급

6. 영농폐기물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수거 봉투 제작

7.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보상금을 주지 않는 영농폐기물이 해남군에서 수거 및 위탁처리

하는 영농폐기물인 경우 수거보상금 지원을 제외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및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10.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75호

붙임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

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는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조의3(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 (종이 수건) · 그림 · 사진 · 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2의2조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유지·관리) ① 공중화장실 등 총괄부서는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전반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③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

- 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
- 2. 세정제
- 3. 방향제
-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6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동화장실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관리할 것
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청소·환기·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제8조(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 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9조(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 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지역자활센터
2.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화장실내·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운영자나 주변시설의 업소
4. 자원봉사자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 설>

과태료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단위 : 만원)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 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	법 제21조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재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치 년 도	관리책임 공무원	소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급					
	관리주체			성명							
관리인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					
구 모	부지 (m ²)	화장실 면적 (m ²)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 인	성인 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 기	화장 지 (자동 판매기)	비 누	수건 (에어 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 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 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10.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76호

붙임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해남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5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비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로 고등학교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장학금을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으로, “자료”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장학

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제4조(중전의 제3조) 중 “제2조”를 “제3조”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하여야”를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5조의2(중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추천된 인원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납금 전액”을 “학기별 2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연 100만원이내”를 “학기별 5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등학생의 경우 생활비 장학금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6년제 대학 12회, 5년제 대학 10회, 4년제 대학 8회, 3년제 대학 6회, 2년제 대학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장학금**”을 “**생활비 장학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퇴직한 때**”를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장학금을 학비**”를 “**생활비 장학금을 학교생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5.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비 장학금 대상에 선발되었을 경우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가기준

1. 총점 배분

계	이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이장 상훈	기장학금 수혜여부
100	30	30	20	2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이장 경력

근속연수	7년 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1년미만
점 수	30	25	20	15	10	5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 성적 부문 (신청 직전 학기)	고등 학생	전체과목 중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				
		90%이상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60%미만
	대학생	평균 학점(4.5점 만점 기준)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5미만
기능, 체육, 예능부문		국가대표급, 각종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도 대표급, 도지사,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군 대표급, 군수, 교육장표 창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 없으나 학장이 안정한 특차
점 수		30	25	20	15	10

단, 대학교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의 학업성적으로 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은 중학교 최종 학기의 전체과목 중 60점 이상 과목수로 한다.

다. 이장 상훈: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하나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군수
점 수	20	15	10	5

라. 기 장학금 수혜여부

횟 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점 수	20	15	10	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u>이장자녀장학금</u>(이하 “<u>장학금</u>”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신 설></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이장의 <u>고등학생 및 대학생</u> 자녀로 하되,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하며,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u>자</u>로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u>해남군 이장자녀 생활비 장학금 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 ----- <u>이장자녀 생활비장학금</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생활비 장학금</u>”이란 <u>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로 고등학교 및 대학생활에 필요한 장학금</u>을 말한다.</p> <p>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 --- <u>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u> ----- ----- <u>사</u> <u>람으로</u> ----- ---.</p> <p>1. 「<u>초·중등교육법</u>」 제2조 제3호에 따른 <u>고등학교</u></p> <p>2. 「<u>고등교육법</u>」 제2조에 따른 <u>대학교</u></p>

<신 설>

<신 설>

②장학생은 이장 1인 1자녀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하되, 제6조에서 규정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생

3.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의 2년제 학위과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대학원
-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해·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 3.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 교육원 및 전문학교)
- 4.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제4조(추천) ----- 제3조-----
----- 사람으로서 -----
----- 사람
을 -----.

제5조(선발) ① -----
--- 사람을 -----
----- 1개월 -----
-----.

② 제1항에 따라 -----

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균 이상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 1. 고등학생 : 공납금 전액
- 2. 대 학생 : 연 100만원이내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신 설>

----- 노력하여
야 -----
-----.

제5조의2(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추천된 인원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제6조(장학금액) -----
-- 생활비 장학금----- 범위에서 다음 각 호-----.

- 1. ----- 학기별 20만원
- 2. ----- 학기별 50만원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생활비 장학금----- 1개월 -----
-----.
-----.

② 고등학생의 경우 생활비 장학금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6년제 대학 12회, 5년제 대학 10회,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 1. 보호자가 이장직을 퇴직할 때
- 2. · 3. (생략)
-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신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년제 대학 8회, 3년제 대학 6회, 2년제 대학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생활비 장학금 -----.

- 1. -----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 2. · 3. (현행과 같음)
- 4. 생활비 장학금을 학교생활 -----

5.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비 장학금 대상에 선발되었을 경우

② ----- 제1항에 따라 -----

<삭제>

제33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3. 10. 27.)에서
의결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1월 15일

해 남 군 수

해남군 조례 제3277호

붙임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현행)

업종별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업종구분	내 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 ○ 일반 목욕장업,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 복지수용시설 및 국가 유공자 단체
일 반 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 업 용	○ 영리를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된 제조업체
공 업 용	○ 별도의 급·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곳

【별표 3】 (개정안)

업종별 구분표(제23조제1항 관련)

업종구분	내 용
가 정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 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 복지수용시설 및 국가 유공자 단체 ○ 기숙사(다만,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의 기숙사의 경우에는 신규로 수전을 설치하거나 사용량 산출을 위한 별도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일 반 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 업 용	○ 영리를 목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된 제조업체
공 업 용	○ 별도의 급·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곳

고 시

해남군 고시 제2023 - 171호

해남군 군계획시설(소로1-35호선, 2-5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370-2번지 일원에 해남군 군계획시설(소로1-35호선, 2-5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16.

해 남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남창리 37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 소로1-35호선, 소로2-51호선
 - 명 칭 : 북평면 남창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4.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 변경 사유 :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및 면적 수정
5. 사업규모
 - 사업면적: (당초) 917㎡(우회전차로 신설 L=104m, B=5m)
(변경) 918㎡(우회전차로 신설 L=104m, B=5m)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7.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건설도시과(☎530-52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

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당초)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합계				18,421	917						
1	북평면 남창리	370-2	도	2,280	287	국유지 (국토교통부)					
2	북평면 남창리	1276	도	11,586	41	국유지 (국토교통부)					
3	북평면 남창리	409-3	도	104	36	업*용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				
4	북평면 남창리	408-1	전	2,368	109	서*자	전남 해남군 북평면 달량진길 **				
5	북평면 남창리	409-5	도	149	110	국유지 (환경부)					
6	북평면 남창리	409-4	도	1,014	325	전라남도					
7	북평면 남창리	410-4	도	920	9	해남군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합계				18,989.4	918						
1	북평면 남창리	370-2	도	2154.9	162	국유지 (국토교통부)					
2	북평면 남창리	1276	도	12154.2	41	국유지 (국토교통부)					
3	북평면 남창리	409-3	도	104	38	업*용	전남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				
4	북평면 남창리	408-1	전	2368.2	110	서*자	전남 해남군 북평면 달량진길 **				
5	북평면 남창리	409-5	도	149.8	110	국유지 (환경부)					
6	북평면 남창리	409-4	도	1014.5	325	전라남도					
7	북평면 남창리	410-4	도	920.8	9	해남군					
8	북평면 남창리	408-3	도	123	123	성*인	경남 창원군 창녕읍 낙영2길 **				

공 고

해남군 공고 제2023 - 2294호

군계획시설(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 및 의견 청취 공고

1. 해남군에서 시행하는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사전 열람 공고하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니,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8.

해 남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1223-1번지 일원	제2스포츠타운 조성 87,767m ² (축구장 1면, 야구장 1면, 복합구장 1면)	해남군수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사업목적 : 관광 비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계 전지훈련 유치 확대,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건강 증진
- 사업기간(예정) : 2023. 12. ~ 2025. 6.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해남군청 스포츠사업단 체육시설팀(해남읍 해리 2번지 우슬 국민체육센터 2층)
- 열람기간: 2023. 11. 9. ~ 2023. 11. 22.
- 의견제출: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붙임 조서 참조

4. 사업시행지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 문의사항은 해남군청 스포츠사업단 체육시설팀(☎061-530-551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토지소유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합계				88,682.1	87,767						
1	삼산면 평활리	190-4	답	982.0	982.0	해남군					
2	삼산면 평활리	192-1	도로	3.0	3.0	대한불교 조계종대흥사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3	삼산면 평활리	192-4	답	291.0	291.0	해남군					
4	삼산면 평활리	250-3	전	570.0	570.0	해남군					
5	삼산면 평활리	250-5	구	53.0	53.0	한국농어촌공사					
6	삼산면 평활리	250-9	전	790.0	790.0	해남군					
7	삼산면 평활리	1051-13	구	811.0	811.0	국(농수산부)					
8	삼산면 평활리	1222-4	답	2,878.1	2,878.1	해남군					
9	삼산면 평활리	1222-5	답	2,873.1	2,873.1	해남군					
10	삼산면 평활리	1222-6	답	806.5	806.5	해남군					
11	삼산면 평활리	1222-7	답	3,587.7	3,587.7	해남군					
12	삼산면 평활리	1222-8	답	1,567.2	1,567.2	해남군					
13	삼산면 평활리	1222-9	답	1,509.4	1,509.4	해남군					
14	삼산면 평활리	1222-10	답	1,246.5	1,246.5	해남군					
15	삼산면 평활리	1222-11	구	939.3	662.9	한국농어촌공사					
16	삼산면 평활리	1222-12	도로	2,109.1	1,470.4	국(기획재정부)					
17	삼산면 평활리	1223-4	답	3,142.4	3,142.4	해남군					
18	삼산면 평활리	1223-5	답	3,269.2	3,269.2	해남군					
19	삼산면 평활리	1223-6	답	3,440.6	3,440.6	해남군					
20	삼산면 평활리	1223-7	답	1,573.9	1,573.9	해남군					
21	삼산면 평활리	1223-18	구	742.8	742.8	한국농어촌공사					
22	삼산면 평활리	1224-1	답	4,095.6	4,095.6	해남군					

23	삼산면 평활리	1224-2	답	1,038.0	1,038.0	해남군				
24	삼산면 평활리	1224-3	답	3,724.4	3,724.4	해남군				
25	삼산면 평활리	1224-4	답	2,422.2	2,422.2	해남군				
26	삼산면 평활리	1224-5	구	442.1	442.1	한국농어 촌공사				
27	삼산면 평활리	1224-7	구	676.5	676.5	한국농어 촌공사				
28	삼산면 평활리	1225-1	답	2,534.1	2,534.1	해남군				
29	삼산면 평활리	1225-2	답	1,124.1	1,124.1	해남군				
30	삼산면 평활리	1225-3	답	2,683.0	2,683.0	해남군				
31	삼산면 평활리	1225-4	답	2,503.5	2,503.5	해남군				
32	삼산면 평활리	1225-5	답	3,663.5	3,663.5	해남군				
33	삼산면 평활리	1225-6	도로	3,491.7	3,491.7	국(기획 재정부)				
34	삼산면 평활리	1225-7	구	3,468.0	3,468.0	한국농어 촌공사				
35	삼산면 평활리	1226-1	답	2,785.4	2,785.4	해남군				
36	삼산면 평활리	1226-2	답	2,651.3	2,651.3	해남군				
						허성옥	진도군 진도면 동외리 1183			1/3지분
						허승우	진도군 진도면 동외리 1166			1/3지분
37	삼산면 평활리	1226-3	답	6,550.3	6,550.3	해남군				
38	삼산면 평활리	1226-4	답	6,257.3	6,257.3	해남군				
39	삼산면 평활리	1226-5	구	269.6	269.6	한국농어 촌공사				
40	삼산면 평활리	1226-8	구	381.6	381.6	한국농어 촌공사				
41	삼산면 평활리	1226-9	답	2,212.1	2,212.1	해남군				
42	삼산면 평활리	1226-10	도로	54.7	54.7	전라남도				
43	삼산면 평활리	1226-11	도로	202.3	202.3	전라남도				
44	삼산면 평활리	신24-23	구	241.0	241.0	한국농어 촌공사				
45	삼산면 평활리	신29-3	임	397.0	397.0	국(기획 재정부)				
46	삼산면 평활리	신29-6	구	925.0	925.0	한국농어 촌공사				
47	삼산면 평활리	신29-7	구	141.0	141.0	한국농어 촌공사				
48	삼산면 평활리	신45-3	임	298.0	298.0	해남군				
49	삼산면 평활리	신45-7	임	263.0	263.0	김제형	나주군 영산포구 삼영리 252			

의 견 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 . .</p> <p>의견제출인 주 소 :</p> <p style="padding-left: 150px;">성 명 : (서명 또는 인)</p> <p style="padding-left: 150px;">전화번호 :</p> <p>해남군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남군 공고 제2023 - 2531호

해남 군관리계획(구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및 공고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138-9번지 일원의 해남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해남군 군계획 조례」 제7조(주민의견 청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으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께서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16.

해 남 군 수

1. 군관리계획 입안내용

- 위치 :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138-9번지 일원
- 군관리계획(구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2. 군관리계획(구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 비치)

4. 공람기간 : 2023. 11. 16. ~ 2023. 11. 30.(14일간)

5. 공람장소 : 해남군청 관광실 및 삼산면사무소

6. 의견 제출방법 및 장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 제출양식을 이용하여 해당 공람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관광실(☎061-530-57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구림 지구단위계획구역	삼산면 구림리 819-3대 일원	354,382	-	354,382	-	관광휴양형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주요 도입시설	
계	354,382	100.0	-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소 계	114,765	32.4	
	숙박시설	32,239	9.1	· 유스호스텔, 일반숙박
	운동·오락시설	16,716	4.7	· 종합체육시설
	휴양·문화시설	34,636	9.8	· 미로파크, 스파랜드,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케이블카
	상업시설	31,174	8.8	-
공공시설용지	164,484	46.4	· 광장, 공원, 공원관리사무소, 안내소, 공공공지, 하천, 주차장, 도로	
녹지용지	75,133	21.2	· 원형보전녹지, 기타녹지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가) 도로

(1) 총괄표

구분	합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3	3,326	32,942	3	692	7,653	3	830	7,686	17	1,804	17,603
중로	2	527	8,059	-	-	-	-	-	-	2	527	8,059
소로	21	2,799	24,883	3	692	7,653	3	830	7,686	15	1,277	9,544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합계	23개소					-	3,326	-	-	-	-	-	-
중로 소계	2개소					-	527	-	-	-	-	-	-
신설	중로	3	1	12	국지도로	337	소로2-1	소로2-3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중로	3	2	13	국지도로	190	소로2-1	소로3-5	일반도로	-	-	구림	
소로 소계	21개소					-	2,799	-	-	-	-	-	-
신설	소로	1	1	11.5	국지도로	27	소로2-3	미로파크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1	2	11	국지도로	389	중로3-1	소로3-9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1	3	11	국지도로	276	중로3-1	경관광장2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2	1	8~9	국지도로	297	북측경계	중로3-2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2	2	8~9.5	국지도로	308	소로2-1	남측경계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225	소로1-2	구림리 138-4대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1	7	국지도로	280	소로2-1	소로2-2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2	7	국지도로	139	소로3-1	구림리 140-15대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3	7	국지도로	140	중로3-2	소로3-5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4	6	국지도로	26	소로3-3	소로3-15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5	7	국지도로	402	소로1-1	소로3-10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6	7	국지도로	13	소로3-5	구림리 146-28대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7	7	국지도로	22	소로3-5	구림리 146-25대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8	5	국지도로	18	소로3-5	구림리 146-22대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9	5	국지도로	36	소로2-2	소로3-5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10	4~5	국지도로	119	소로3-5	구림리 146-22대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11	5	국지도로	24	소로2-3	구림리 138-32대	일반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12	6	특수도로	14	소로3-5	주차장-1	보행자전용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13	6	특수도로	15	소로3-5	주차장-1	보행자전용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14	6	특수도로	16	소로3-5	주차장-1	보행자전용도로	-	-	구림	
신설	소로	3	15	6	특수도로	13	소로3-4	소로3-5	보행자전용도로	-	-	구림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개소	-	-	-	32,607	-	-
신설	구림①	주차장	구림리 146-14차 일원	-	-	11,861	-	-
신설	구림②	주차장	구림리 140-14임 일원	-	-	5,426	-	-
신설	구림③	주차장	구림리 155전 일원	-	-	2,221	-	가압장 포함(67 m ²)
신설	구림④	주차장	구림리 138-22임 일원	-	-	3,060	-	-
신설	구림⑤	주차장	구림리 138-10임 일원	-	-	3,301	-	-
신설	구림⑥	주차장	구림리 138-29임 일원	-	-	6,738	-	-

2) 공간시설(변경없음)

가) 광장

(1)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	-	-	44,332	-	-
신설	구림①	광장	경관광장	구림리 143답 일원	-	-	5,485	-	-
신설	구림②	광장	경관광장	구림리 159답 일원	-	-	20,882	-	-
신설	구림③	광장	경관광장	구림리 123전 일원	-	-	17,965	-	-

나) 녹지

(1)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0개소		-	-	75,133	-	-	
신설	구림 ①	녹지	경관녹지	구림리 138-11임 일원	-	-	40,430	-	원형보전녹지
신설	구림 ②	녹지	경관녹지	구림리 산7-8임 일원	-	-	15,981	-	원형보전녹지
신설	구림 ③	녹지	경관녹지	구림리 산25-5임 일원	-	-	9,497	-	원형보전녹지
신설	구림 ④	녹지	경관녹지	구림리 산24-1임 일원	-	-	5,155	-	원형보전녹지
신설	구림 ⑤	녹지	경관녹지	구림리 152전 일원	-	-	1,876	-	기타녹지
신설	구림 ⑥	녹지	경관녹지	구림리 150전 일원	-	-	229	-	기타녹지
신설	구림 ⑦	녹지	경관녹지	구림리 146-18잡 일원	-	-	701	-	기타녹지
신설	구림 ⑧	녹지	경관녹지	구림리 146-12도 일원	-	-	267	-	기타녹지
신설	구림 ⑨	녹지	경관녹지	구림리 146-12도 일원	-	-	177	-	기타녹지
신설	구림 ⑩	녹지	경관녹지	구림리 809-85도 일원	-	-	820	-	기타녹지

다) 공원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	-	15,727	-	-	
신설	구림 ①	구림1	근린공원	구림리 201답 일원	-	-	9,918	-	-
신설	구림 ②	구림2	소공원	구림리 146-6공 일원	-	-	5,809	-	-

라) 공공공지

(1)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	966	-	-	
신설	구림 ①	공공공지		구림리 146-10잡 일원	-	-	966	-	-

3)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하천

(1)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2개소	-	-	-	-	3.0 (1.2)	-	73,721 (37,751)	-	-
기정	㉔	대흥사천	지방하천	삼산면 구림리 809-44천 일원	삼산면 구림리 809-1천 일원	삼산면 일원	2.4	최소:15 최대:50	48,890	전남고시 제2009-272호 (2009.06.19.)	-
변경	㉔	대흥사천	지방하천	삼산면 구림리 809-44천 일원	삼산면 구림리 809-1천 일원	삼산면 일원	2.4 (0.6)	최소:15(28) 최대:50(40)	56,553 (20,583)	전남고시 제2009-272호 (2009.06.19.)	-
신설	㉔	하천	소하천	삼산면 구림리 809-83천 일원	삼산면 구림리 809-1천 일원	삼산면 일원	(0.6)	최소:(25) 최대:(30)	(17,168)	-	-

※ 주1)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 및 면적임.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합 계		95,720	14개	-	95,720	-
공공 시설 용지	E	95,720	1	삼산면 구림리 143답 일원	5,485	광장
			2	삼산면 구림리 159답 일원	20,882	광장
			3	삼산면 구림리 120전 일원	17,965	광장
			4	삼산면 구림리 140-11 일원	1,363	관리사무소
			5	삼산면 구림리 140-17 일원	725	안내소(매표소)
			6	삼산면 구림리 146-14 일원	11,861	주차장
			7	삼산면 구림리 140-14 일원	5,426	주차장
			8	삼산면 구림리 155전 일원	2,221	주차장
			9	삼산면 구림리 138-22임 일원	3,060	주차장
			10	삼산면 구림리 138-10임 일원	3,301	주차장
			11	삼산면 구림리 138-29임 일원	6,738	주차장
			12	삼산면 구림리 201답 일원	9,918	근린공원
			13	삼산면 구림리 146-6 일원	5,809	소공원
			14	삼산면 구림리 146-10잡 일원	966	공공공지

2)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치	면적(m ²)	
합 계		114,765	46개	-	114,765	-
소계		32,239	14개	-	32,239	-
숙박 시설	A	32,239	1	삼산면 구림리 138-4 일원	9,855	유스호스텔
			2	삼산면 구림리 138-32 일원	1,950	일반숙박
			3	삼산면 구림리 138-18 일원	2,475	일반숙박
			4	삼산면 구림리 146-22	2,284	일반숙박
			5	삼산면 구림리 146-24	1,447	일반숙박
			6	삼산면 구림리 146-25	1,907	일반숙박
			7	삼산면 구림리 146-27	1,172	일반숙박
			8	삼산면 구림리 146-28	1,405	일반숙박
			9	삼산면 구림리 146-30	1,215	일반숙박
			10	삼산면 구림리 146-31	1,552	일반숙박
			11	삼산면 구림리 146-32	2,396	일반숙박
			12	삼산면 구림리 140-15 일원	2,513	일반숙박
			13	삼산면 구림리 140-13 일원	934	일반숙박
			14	삼산면 구림리 140-12 일원	1,134	일반숙박
소계		16,716	1개	-	16,716	-
운동 오락 시설	B	16,716	1	삼산면 구림리 144 일원	16,716	종합체육시설
소계		34,636	4개	-	34,636	-
휴양 문화 시설	C	34,636	1	삼산면 구림리 138-30 일원	15,466	미로파크
			2	삼산면 구림리 138-8 일원	5,866	스파랜드
			3	삼산면 구림리 138-19 일원	11,397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4	삼산면 구림리 138-6 일원	1,907	두륜산 케이블카
소계		31,174	27개	-	31,174	-
상업 시설	D	31,174	1	삼산면 구림리 138-3 일원	1,086	-
			2	삼산면 구림리 138-2 일원	1,079	-
			3	삼산면 구림리 138-1 일원	1,560	-
			4	삼산면 구림리 138-5 일원	1,560	-
			5	삼산면 구림리 146-19 일원	696	-
			6	삼산면 구림리 146-21 일원	932	-
			7	삼산면 구림리 146-17 일원	855	-
			8	삼산면 구림리 146-23 일원	670	-

(표 계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상업 시설	D	31,174	9	삼산면 구림리 146-16 일원	449	-
			10	삼산면 구림리 146-15 일원	1,081	-
			11	삼산면 구림리 146-13 일원	1,093	-
			12	삼산면 구림리 146-26 일원	1,020	-
			13	삼산면 구림리 146-29 일원	663	-
			14	삼산면 구림리 146-9 일원	1,384	-
			15	삼산면 구림리 146-8 일원	1,840	-
			16	삼산면 구림리 146-5 일원	901	-
			17	삼산면 구림리 146-11 일원	356	-
			18	삼산면 구림리 146-7 일원	747	-
			19	삼산면 구림리 140-16 일원	3,064	-
			20	삼산면 구림리 140-8 일원	874	-
			21	삼산면 구림리 140-5 일원	775	-
			22	삼산면 구림리 140-19 일원	725	-
			23	삼산면 구림리 819-31 일원	1,090	-
			24	삼산면 구림리 산25-6임 일원	1,085	-
			25	삼산면 구림리 152 일원	857	-
26	삼산면 구림리 150 일원	1,143	-			
27	삼산면 구림리 산146-20임 일원	3,589	-			

마.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구분	계획내용	
공공 시설 용지	E1 ~ E3	광장	용도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다’ 목에 따른 경관광장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율	• 100% 이하	
			높이	• 2층 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E4	공원관리 사무소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율	• 200% 이하	
			높이	• 2층 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E5	안내소 (매표소)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율	• 100% 이하	
			높이	• 1층 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E6 ~ E11	주차장	용도	허용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단, 주차전용 건축물일 경우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40% 이하	
			용적율	• 80% 이하	
높이			• 2층 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공공시설용지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2) 관광휴양시설용지(변경)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구분	계획내용	
관광휴양시설용지	A1	유스호텔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텔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율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관광휴양시설용지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A2 ~ A14	숙박시설	용도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율	• 200% 이하	
			높이	• 4층 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관광휴양시설용지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B1	종합체육시설	용도	허용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율	• 100% 이하	
			높이	• 1층 이하	
배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채 (권장사항)			• 관광휴양시설용지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표 계속)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구분		계획내용
관광휴양시설용지	C1 ~ C3	미로파크, 스파랜드,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및 관련 부대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및 관련 부대시설 - 위락시설 중 다목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이하(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 4층 이하(스파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휴양시설용지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C4	두륜산 케이블카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관광편의 시설업(관광케도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층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휴양시설용지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용도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안마원, 장의원, 총포판매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단, 2층 이상부터 허용하되 1개 층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외의 용도 	

(표 계속)

구 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구 분	계 획 내 용
	D1 ~ D27	상업 시설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율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주변시설 및 지형을 고려한 향 배치
			형 태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조형적 형태 권장
			색 채 (권장사항)	• 관광휴양시설용지에 설치되는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별표1]에 제시된 기준을 권장

[별표 1] 건축물의 색채 가이드라인 (변경사항 없음)

- ① 건축물의 색채는 「해남군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구립 지구단위 계획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요소별 권장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것을 권장한다.
- ②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아래에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1. 주조색은高明도 저채도로 사용을 권장한다.
 2.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한다.
 3.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색상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 건축물 권장 색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도 7 이상 / 채도 4 이하 ▶ 적용 범위 : 6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도 4 이상 / 채도 4 이하 ▶ 적용 범위 : 10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범위 없음 ▶ 적용 범위 : 10% 이내 																																																																
<table border="1"> <tr> <td>L*a*b 80.49 2.24 2.11</td> <td>L*a*b 80.52 1.01 6.81</td> <td>L*a*b 30.36 0.9 12.79</td> <td>L*a*b 80.49 1.18 27.58</td> </tr> <tr> <td>10R 8/1</td> <td>10YR 8/1</td> <td>3.75Y 8/2</td> <td>2.5Y 8/4</td> </tr> <tr> <td>L*a*b 70.86 -1.43 15.04</td> <td>L*a*b 80.54 -4.02 7.79</td> <td>L*a*b 80.58 -9.8 12.05</td> <td>L*a*b 70.88 -5.62 4.59</td> </tr> <tr> <td>5Y 7/2</td> <td>5GY 8/1</td> <td>7.5GY 8/2</td> <td>10GY 7/1</td> </tr> <tr> <td>L*a*b 90.2 -1.8 -2.13</td> <td>L*a*b 80.55 -3.02 -2.03</td> <td>L*a*b 80.53 -0.33 -2.39</td> <td>L*a*b 80.51 3.93 -3.56</td> </tr> <tr> <td>10B 9/1</td> <td>5B 8/1</td> <td>5PB 8/1</td> <td>6.25P 8/2</td> </tr> </table>	L*a*b 80.49 2.24 2.11	L*a*b 80.52 1.01 6.81	L*a*b 30.36 0.9 12.79	L*a*b 80.49 1.18 27.58	10R 8/1	10YR 8/1	3.75Y 8/2	2.5Y 8/4	L*a*b 70.86 -1.43 15.04	L*a*b 80.54 -4.02 7.79	L*a*b 80.58 -9.8 12.05	L*a*b 70.88 -5.62 4.59	5Y 7/2	5GY 8/1	7.5GY 8/2	10GY 7/1	L*a*b 90.2 -1.8 -2.13	L*a*b 80.55 -3.02 -2.03	L*a*b 80.53 -0.33 -2.39	L*a*b 80.51 3.93 -3.56	10B 9/1	5B 8/1	5PB 8/1	6.25P 8/2	<table border="1"> <tr> <td>L*a*b 60.99 4.2 26.07</td> <td>L*a*b 51.0 -0.66 7.1</td> <td>L*a*b 50.99 0.28 13.9</td> <td>L*a*b 61.07 -7.21 26.68</td> </tr> <tr> <td>1.25Y 6/4</td> <td>5Y 5/1</td> <td>3.75Y 5/2</td> <td>10Y 6/4</td> </tr> <tr> <td>L*a*b 61.08 -8.98 28.01</td> <td>L*a*b 61.08 -7.33 12.94</td> <td>L*a*b 51.09 -15.0 21.55</td> <td>L*a*b 40.78 -8.28 8.8</td> </tr> <tr> <td>1.25GY 6/4</td> <td>5GY 6/2</td> <td>6.25GY 5/4</td> <td>7.5GY 4/2</td> </tr> <tr> <td>L*a*b 61.12 -8.07 -4.62</td> <td>L*a*b 61.11 -6.59 -5.44</td> <td>L*a*b 61.09 -1.96 -14.42</td> <td>L*a*b 61.06 -0.26 -6.81</td> </tr> <tr> <td>1.5B 6/2</td> <td>5B 6/2</td> <td>3.75PB 6/4</td> <td>5PB 6/2</td> </tr> </table>	L*a*b 60.99 4.2 26.07	L*a*b 51.0 -0.66 7.1	L*a*b 50.99 0.28 13.9	L*a*b 61.07 -7.21 26.68	1.25Y 6/4	5Y 5/1	3.75Y 5/2	10Y 6/4	L*a*b 61.08 -8.98 28.01	L*a*b 61.08 -7.33 12.94	L*a*b 51.09 -15.0 21.55	L*a*b 40.78 -8.28 8.8	1.25GY 6/4	5GY 6/2	6.25GY 5/4	7.5GY 4/2	L*a*b 61.12 -8.07 -4.62	L*a*b 61.11 -6.59 -5.44	L*a*b 61.09 -1.96 -14.42	L*a*b 61.06 -0.26 -6.81	1.5B 6/2	5B 6/2	3.75PB 6/4	5PB 6/2	<table border="1"> <tr> <td>L*a*b 50.79 31.74 29.65</td> <td>L*a*b 70.73 13.2 33.9</td> <td>L*a*b 80.54 -9.83 43.58</td> <td>L*a*b 40.72 1.88 13.94</td> </tr> <tr> <td>10R 5/8</td> <td>7.5YR 7/6</td> <td>8.75Y 8/6</td> <td>2.5Y 4/2</td> </tr> <tr> <td>L*a*b 61.16 -21.59 53.25</td> <td>L*a*b 51.24 -37.43 31.39</td> <td>L*a*b 40.96 -32.35 9.99</td> <td>L*a*b 70.97 -8.26 -21.57</td> </tr> <tr> <td>3.75GY 6/8</td> <td>10GY 5/8</td> <td>5G 4/6</td> <td>1.25PB 7/6</td> </tr> </table>	L*a*b 50.79 31.74 29.65	L*a*b 70.73 13.2 33.9	L*a*b 80.54 -9.83 43.58	L*a*b 40.72 1.88 13.94	10R 5/8	7.5YR 7/6	8.75Y 8/6	2.5Y 4/2	L*a*b 61.16 -21.59 53.25	L*a*b 51.24 -37.43 31.39	L*a*b 40.96 -32.35 9.99	L*a*b 70.97 -8.26 -21.57	3.75GY 6/8	10GY 5/8	5G 4/6	1.25PB 7/6
L*a*b 80.49 2.24 2.11	L*a*b 80.52 1.01 6.81	L*a*b 30.36 0.9 12.79	L*a*b 80.49 1.18 27.58																																																															
10R 8/1	10YR 8/1	3.75Y 8/2	2.5Y 8/4																																																															
L*a*b 70.86 -1.43 15.04	L*a*b 80.54 -4.02 7.79	L*a*b 80.58 -9.8 12.05	L*a*b 70.88 -5.62 4.59																																																															
5Y 7/2	5GY 8/1	7.5GY 8/2	10GY 7/1																																																															
L*a*b 90.2 -1.8 -2.13	L*a*b 80.55 -3.02 -2.03	L*a*b 80.53 -0.33 -2.39	L*a*b 80.51 3.93 -3.56																																																															
10B 9/1	5B 8/1	5PB 8/1	6.25P 8/2																																																															
L*a*b 60.99 4.2 26.07	L*a*b 51.0 -0.66 7.1	L*a*b 50.99 0.28 13.9	L*a*b 61.07 -7.21 26.68																																																															
1.25Y 6/4	5Y 5/1	3.75Y 5/2	10Y 6/4																																																															
L*a*b 61.08 -8.98 28.01	L*a*b 61.08 -7.33 12.94	L*a*b 51.09 -15.0 21.55	L*a*b 40.78 -8.28 8.8																																																															
1.25GY 6/4	5GY 6/2	6.25GY 5/4	7.5GY 4/2																																																															
L*a*b 61.12 -8.07 -4.62	L*a*b 61.11 -6.59 -5.44	L*a*b 61.09 -1.96 -14.42	L*a*b 61.06 -0.26 -6.81																																																															
1.5B 6/2	5B 6/2	3.75PB 6/4	5PB 6/2																																																															
L*a*b 50.79 31.74 29.65	L*a*b 70.73 13.2 33.9	L*a*b 80.54 -9.83 43.58	L*a*b 40.72 1.88 13.94																																																															
10R 5/8	7.5YR 7/6	8.75Y 8/6	2.5Y 4/2																																																															
L*a*b 61.16 -21.59 53.25	L*a*b 51.24 -37.43 31.39	L*a*b 40.96 -32.35 9.99	L*a*b 70.97 -8.26 -21.57																																																															
3.75GY 6/8	10GY 5/8	5G 4/6	1.25PB 7/6																																																															

【 공공시설 권장 색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 9 ~ 7, 채도 4 이하 ▶ 적용 범위 : 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 7 ~ 5, 명도 8 이상, 채도 3 이하 ▶ 적용 범위 : 10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도 5 ~ 7, 채도 6 이하 ▶ 적용 범위 : 5% 이내

【 공공매체 권장 색채 】

바탕색	글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도 8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도 3 이하, 채도 10 이상 색채 사용금지